

##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영향평가

한상욱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부회장

###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ang-Wook Han

Vice President,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대상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자연에 끼치는 유해한 영향 즉, 공해문제로부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원·에너지의 소진, 생태계 파괴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환경대책도 공간적으로는 지역적인 것으로부터 지구적차원으로 시간적으로는 당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삶을 영위하는 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지속가능한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1992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는 세계 각국의 정상과 환경전문가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세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행동강령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21세기를 위한 세부실천강령인 「Agenda 21」에 합의를 하였다. 즉,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기치하에 국제기구, 각국정부, 단체 국민들이 범세계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규범을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의 정립과 이의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의 모색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노력이 있어 왔으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

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일명 Brutland Commission)」는 1987년에 동위원회에서 발간한 「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장래 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고 현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과 보전」으로 정의하고, 1991년 4월 환경관리에 관한 제2회 세계산업회의(The Second World Industry Conference on Environmental Management, WICEM II)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민간으로서 뒷받침하고 이를 구현시키는데 있어서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집행위원회가 1990년 11월 채택한 「지속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원칙에 관한 기업헌장(Business Chart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을 기업의 환경관리를 위한 행동규범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는 리우지구정상회담에서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산업계의 공약으로서 받아들여졌다(92.). UNCED는 이를 Agenda 21의 제30장 「상공계의 역할강화」에서 기업의 정책방향, 목표, 정책수단, 실행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국의 환경보전종합계획의 성격을 띤 장기계획예컨대, EU의 제5차환경행동계획(91), 일본의 환경기본

계획(94), 미국의 The New Generation of Environmental Protection(95) 등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이 계획의 기본 이념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발전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여야 할 과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념 구현을 위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정립시켜야 할 것인가 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UNCED의 Agenda 21의 여러부문에서 엿볼 수 있다. 예컨대, Agenda21의 제8장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하여 규제적수단, 경제적수단 및 경영적수단이 종합적으로 활용되므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이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한 규제적, 경제적, 경영적수단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수단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인간활동에 따른 환경고려를 국가환경정책에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는 의사결정의 수단이고 규제적 수단은 국가 법규와 환경 행정을 통해 적용되는 전통적인 정책수단이며, 경제적 수단은 개인, 기업이 환경보전에 적합한 행동을 취할 것을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보조금, 과징금, 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경영적 수단은 조직이 자신들의 환경방침을 공표하고 그 실천을 통해 환경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환경경영규격인 영국의 BS 7750, EU의 EMAS, 세계표준화기구의 ISO 14000시리즈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그 기저에는 환경정책의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f Environmental Policy)이 되는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pays principle), 협력원칙(Principle of Cooperation)에 적용되고, 또한, 조직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사용, 재활용, 폐기과정에서 야기되는 비용을 내부화시켜 외부 불경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념이 담겨있다.

이상의 정책 수단을 지지하는 것은 기술로서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 수단과 기술적 수단의 적절한 접목과 통합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지구환경보호,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규제적수단, 경영적수단, 정책적수단, 기술적수단의 상호관계를 보면(그림1 참조),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잠재적 환경영향의 회피나 완화를 위한 상위개념의 정책수단이고, 규제적, 경영적, 경제적수단 및 기술적 수단은 잠재적, 실제적 환경영향의 회피 완화를 위한 하위개념의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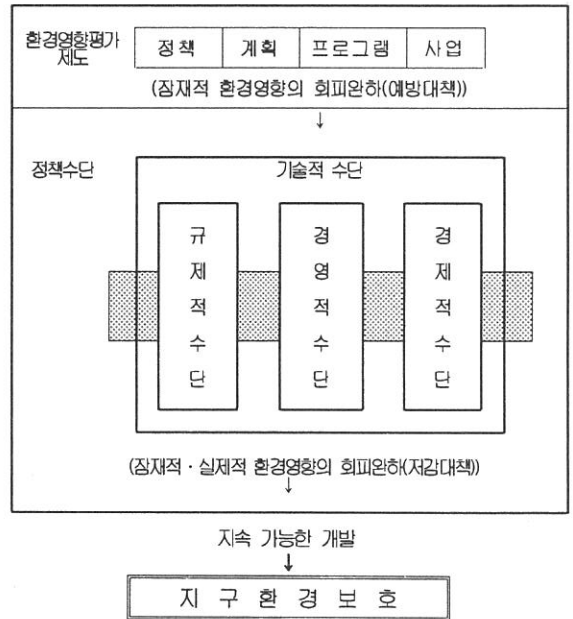


그림 1.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수단과 기술적 수단의 통합개념

「지속 가능한 개발」은 1992년 6월 5일에 제정 선포된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환경선언」과 1996년 1월에 발표된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인 「환경비전 21」에서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바, 동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

에 있어서 미리 당해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적수단, 경제적수단 및 경영적수단에 대하여는 여러 환경법에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적 수단은 1995년 12월 29일 제정 공포된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과 같은 날짜로 개정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수

질환경보전법」, 및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과 97년 3월 7일자로 개정 공포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그 근거를 엿볼 수 있다.

이제 새로운 발전개념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의 구현을 위한 도구로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경제적수단, 경영적수단과 함께 정책수단으로서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